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25
----------	------

2017. 9.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7. 7. 4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2017. 7. 5 회부)

2. 제안이유

- 현재 시행규칙과 서울시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요건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업무에 대한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과 서울시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요건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7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재상정 규정 신설(도시계획 조례 제61조의2)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재상정 할 수 있다.

- 현행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포함, 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동일안건 5년 이내 재상정 금지¹⁾ 조항은 2000년 11월 6일 도시계획조례와 시행규칙의 최초 제정 당시 건설부 훈령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²⁾(5년이내 변경 원칙적으로 제한)을 준용하여 조례 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22조(회의결과의 관리) 제4항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한다.

2)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건설부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행규칙에 신설한 것으로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탄력적인 대응과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상정 가능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상정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후 5년내 원칙적 변경 금지” 규정(〈붙임 1〉 참조)이 2014년 7월 31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음에도 서울시가 여전히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임.
- 서울시는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따라 “재상정 금지의 예외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시 내부방침³⁾(〈붙임 2〉 참조)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음.

□ 검토사항

○ 형식의 적정성

- 현행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안건의 재상정”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위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였고, 서울시는 이에 따라 1979년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 변경결정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을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였음.

3) 행정2부시장 방침(2006.3)

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안건의 재상정 여부를 법 시행령 114조제2호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한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됨.

국토계획법 제114조(운영 세칙)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간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내용의 적정성

- 서울시가 안건 재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건 처리기간 지연 및 반복 심의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일 안건을 반복 상정”하거나 “가결 안건을 반복 상정”하는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관련 절차 중단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현행 규정과 같이 이를 규칙으로 규율함으로써 특별한 사유와 동일안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는 점도 인정됨.
- 한편, 타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금지규정'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과 대구광역시는 조례 입법 형식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시행규칙에서 기간 제한 없이 재상정을 금지하고 있음.

<타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금지규정 현황>

연번	구 분	조 문
1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	제10조(회의운영) ⑥ 동일한 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u>부결된 안건은 5년</u> 이내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제외 <신설 2015.10.01.> 1. 위원회가 4회 이상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결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입안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0조(회의운영) ④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u>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 금지 <신설 2012. 11. 12>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2조(회의결과의 관리) ② 도시계획위원회에서 <u>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u> 같은 안건으로 재상정 금지. <2012.7.2.시행규칙 제정>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10조의2(회의결과의 관리) ⑤ 위원회에서 <u>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4.10.10.>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관련 조항 없음

□ 종합

- 사회적·기술적 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의 탄력적 대응 및 시민 재산권 제한의 최소화 등 개정안의 취지와 재상정 금지 사항을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유지하되, 재상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우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칙적 금지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붙임 1> 5년대 재상정 금지 내용 삭제 (2014. 7. 31) 관련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7장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제1절 기본원칙

1-7-1-2.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변경제한의 예외

1-7-2-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다음의 경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2-1-4.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붙임 2> 재상정 금지의 예외 사유 (2006. 3 행정2부시장 방침)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가. 국토종합계획·광역개발계획 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나. 국가보안상의 사유 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라.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마.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재상정하는 경우
-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재상정하는 경우
- 사.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상정하는 경우. 다만,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아. 문화재와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자. 관계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감소되는 공업지역에 대체되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가. 제1호의 가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도시계획시설의 신설(기존시설의 확장을 포함)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다. 업무상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보전대상이 되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유서지 또는 지형·지물상의 조건이 심히 불합리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거나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시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라. 암반의 노출, 지반의 붕괴 및 용기현상, 지하수의 용출 등 예기치 못했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시공이 심히 곤란하거나 공사비가 당초에 비하여 30% 이상이 초과 소요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이 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마.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바.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 사. 도로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선의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폭원에 필요한 도로부대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3. 그 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